2003. 12. 8(월)
산업건설위원회

- 상·하수도 업무 -

공기업(지방직영기업) 전환

상하수도사업소

상·하수도 업무 공기업(지방직영기업) 전환

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상.하수도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아울러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▣. 지방직영기업 전환의 필요성 및 효과

1. 지방행정 수행에 수익자 부담원리 도입

○ 국민소득증가 및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요구가 질적, 양적으로 팽창 ⇒ 행정수요 폭증

○ 팽창하는 주민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수요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조세부담 증가에는 크게 반발

○ 행정서비스의 분할공급이 가능하고 그 공급비용의 구분징수가 가능한 사업은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에게 수익의 정도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정원리도입이 보편화

⇒ 수혜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행정서비스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면

· 주민욕구의 무한정 확대 및 재정수요 팽창현상 초래

· 경제재의 가격체계 외곡

2.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원리 도입

○ 수익자 부담원리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정확한 원가계산 및 사업수행으로 인한 연간의 수지계산 등을 명백하고 과학적으로 실시 ⇒ 재무제표작성

○ 재무제표 작성을 통하여 신뢰성 있는 각종 경영정보(자산·자본규모, 원가 및 요금수준, 당기순이익, 채무, 각종수지비율)를 얻고 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가능 ⇒ 경영개선에 기여

3. 자율경영을 통하여 독립채산 기반조성

○ 경직성 있는 일반회계의 예산, 회계제도등을 완화하여 운영상 신축성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율적인 운영으로 책임있는 책임경영 체제구축 ⇒ 독립채산 기반조성에 기여

· 세항, 목간 경비 전용의 자율성, 수입금마련 지출, 건설계량 이월, 독립적인 예산결산 등

※ 다만 정책적인 저요금 수준유지, 지역개발을 위한 선 투자경비등 당해 공기업의 비용부담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비는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함

4. 요금제 사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

○ 공무원에 의한 사업수행은 잦은 보직변경으로 책임한계의 불명확, 전문성 결여로 사업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기 쉬움

○ 특히 상·하수도 업무를 한직 또는 기피부서로 인식할 경우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의 육성과 경영 노하우 축척에 장애 ⇒ 지방공기업은 기업 직렬(기업행정, 수도토목)공무원 제도의 운영이 가능하여 특정사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에 유리함

5.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용이

○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용이

○ 사업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⇒ 비용과 수익에 대한 인식, 기관 및 개인성과에 대한 관심증대

○ 관리자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로 운영비용의 낭비 감소 및 대민 서비스 개선 지향

▣ 법 적 근 거

1. 관련법령

○ 적용범위 (지방공기업법 제2조)

- 상수도사업(간이상수도 제외)
- 하수도사업

○ 지방직영기업의 범위(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)

- 상수도사업 : 1일 생산능력 15,000톤 이상
- 하수도사업 :하수처리장 시설 구비

※ 전환 제외대상 : 생산시설능력은 지방공기업 당연적용 대상이나 조정량(요금부과수량)이 일정량 미만인 경우

- 상수도 : 조정량이 1일 평균 5,000톤 미만
- 하수도 : 조정량이 1일 평균10,000톤 미만

▣ 우리군의 상.하수도 기본현황

○ 상수도 현황

총인구	급수인구	시설용량 (㎥/1일)	생 산 량 (㎥/1일)	공 급 량 (㎥/1일)	1인1일 급수량(ℓ)	급수전수 (전)	비 고
67,403	39,267	23,300	12,644	7,846	216	5,927	

○ 하수도 현황

총인구	하수구역내 인 구	보급률(%)	시설용량 (㎥/1일)	하수발생량 (㎥/1일)	1인1일하수량 (㎥/1일)	수용가구	비 고
67,403	42,561	63	19,500	20,500	0.48	5,279	

※ 1일 오폐수 유입량 : 10,134톤. 1일 우수 및 누수 : 10,366톤

○ 수입 및 지출 현황

구 분	조정량 (천톤)	총괄원가 (백만원)	요금수입 (백만원)	결손액 (백만원)	톤당원가 (원)	톤당요금 (원)	현실화율 (%)	비 고
계		3,454	1,843	1,611				
상수도	2,864	2,634	1,451	1,183	920	507	55	
하수도	3,699	820	392	428	448	106	24	

▣ 지방직영기업과 기타특별회계의 운영상 차이점

구 분	기 타 특 별 회 계	지 방 직 영 기 업
회계처리	· 단식부기	· 복식부기
예산편성	· 세입, 세출	· 사업예산 - 수익적수입, 수익적지출 · 자본예산 - 자본적수입, 자본적지출
결산	· 자체결산 → 지방의회 승인	· 자체결산 → 공인회계사의 감사 → 지방의회 승인 - 매년 재무제표 작성, 원가계산 등 (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 등)
경영평가	· 재정분석	· 2년1회 경영평가 -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경영실적 평가
회계장부	· 징수부, 지출원인행위부, 지출부, 현금출납부 · 공유재산관리대장, 건축물 관리대장 및 물품관리장부 · 채권관리부, 채무관리부	· 수입예산정리부, 지출예산통계원장, 자금수입 기록부, 자금지출기록부, 총계정원장, 계정별 보조원장, 이월예산관리대장, 교부자금관리 대장, 합계잔액시산표 · 재고자산대장, 유형자산대장 · 차입금관리대장
회계관직	· 징수관, 경리관, 지출원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수입금출납원, 세입세출외 출납원, 물품출납원	· 관리자, 징수관, 기업출납원, 지출원, 재산 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수입금출납원, 세입세출외출납원, 물품출납원
법령적용	지방재정법, 재무회계규칙	· 지방공기업법, 지방공기업재무회계규칙 - 단, 지방공기업법령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회계관련 규정 적용

▣ 추 진 사 항

〈지금까지 추진사항〉

○ 전환 기본계획수립('02. 12)
○ 자산 평가용역(토지, 건물, 구축물, 비품, 부채 등) ⇒ '03. 03~06
○ 상. 하수도사업설치 조례·규칙 제정(안) 확정('03. 05)
○ 상. 하수도 공기업 재무회계규칙(안) 확정('03. 05)
○ 조례·규칙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('03. 05)
○ 자산평가 및 원가계산('03. 06)
○ 사업설치 조례·규칙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('03. 11)
○ 사업설치 조례제정(안) 의회 상정 ('03. 11)

〈향후 추진계획〉

○ 조례 및 규칙 공포('03. 12)
○ 공기업 담당 인력 확보('04. 1)
○ 공기업 담당자 운영시군 견학('04. 2)
○ 공기업 프로그램 설치('04. 3)
○ 담당자 전문교육 이수('04. 4)
○ 공기업회계 장부 도상 연습(('04. 5~9)
○ 지방공기업 예산편성('04. 10)
○ 각종 예산 회계장부 등 비치('04. 10)
○ 공기업 전환('05. 01. 01)

▣ 예상되는 문제점

○ 상수도는 수익자 부담원칙, 하수도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생산원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요금인상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상
○ 전문직렬(기업행정. 수도토목 등)이 없어 공기업전환 애로